

## 08 개호비(가정간호비)

### ▣ 간병비

#### ▣ 개념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 즉 식사, 세면, 보행이나 이동, 대소변 등을 혼자서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간호사 이외에 보호자 또는 간병인(부침인)이 환자를 간병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간병비라고 합니다(퇴원 후 또는 치료종결 후에는 개호비라고 칭함).

#### ▣ 인정기준

1.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입원기간중의 간병비를 인정
  - ▷ 입원 5개월 동안 개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개호 내지 간병의 정도는 상해부위 및 정도와 후유장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 간호사의 일반적인 간호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여 실제로 지출한 간병인의 비용은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 배척함(서울지법97가단210280)
2. 개호인이 필요없는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고 있는 경우는 불인
3. 직업 간병인의 특별한 간병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에 없는 한 보통 인부의 일용임금에 의하여 인정
4. 환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간병비 지급여부에 상관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간병인 비용 전액을 인정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실이익 산정방법과 같이 월22일 또는 25일씩이 아니라 전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인정

#### ▣ 인정방법

법원에서 촉탁한 신체감정의사 또는 치료병원의 주치의에 간병비 필요성과 그 기간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여 그 의견에 따라 상당성 범위내에서 인정

### ▣ 개호비(가정 간호비)

#### ▣ 개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애가 남은 피해자가 여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자력으로 활동을 하기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이를 개호로 보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손해로 파악하여 인정하는데 이를 개호비라 함.

또한 피해자가 증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간호사의 별도 간병인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비용을 간병비(또는 간호비, 부침비용 등)라 하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어 사용되고 있진 않는 듯함.

즉, 수술 후 대소변을 받아주어야 할 기간. 식물인간상태나 하반신 마비나 사지마비상태 등이 해당된다. 의사의 소견 등을 근거로 하여 간병비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간병비용 영수증 혹은 시중노임단가 기준 공사부분 보통인부임금의 1일치를 하루 간병비용으로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엔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음.

**■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

개호란 장애자가 타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이 불가능한 때에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간호',나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개념과는 다르며, 결국 개호는 스스로 "생명유지가 어렵다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아님)", "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할 만큼 심한 지적 또는 정서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과적 측면)"에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판단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연령, 치료기간, 사회적·경제적조건등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임.

**■ 개호비의 산정기준**

의사로부터 개호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하며 그 때 판단되어지는 개호인의 수와 환자의 여명 단축여부 및 그 정도, 1일 개호시간 등을 기준으로 개호인 1인당(하루 8시간 기준)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분 보통인부 1일 해당임금으로 산정함.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도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평균여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실제의 여명(단축된 여명)기간 동안에 한해 개호(개호년수)를 인정한다. 단,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함.

자동차보험에서는 1명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장애율 100%로 인정받아야하고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로 인정되는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호인원도 1일 1인으로 제한하고 생존기간에 대해 일시금 또는 매월 정기금지급을 규정해 놓고 있음.

1일 개호비용도 시중노임단가 기준 공사부분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으로하며 개호비용은 사망이

나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상실)수익액의 산정과 같이 개호에 필요한 기간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불로 산정되며 일시불이 아닌 매달 정기금식 지급이라면 중간이자가 공제될 필요는 없음.

▶ 예시

향후 여명기간 20년(자연여명은 30년이나 여명단축 10년 있는 경우), 장해율 80%인 환자에게 개호인 1인이 필요하고 과실비율이 50%일 경우,

1,576,950원(2004년 하반기 건설공사부분 보통인부 1일 임금인 52,565원 × 30일) × 166.1055 × 50% = 130,970,034원

▷ 여기서 166.1055는 향후 20년(240개월)에 대한 중간이자공제(월단위기본표 적용)후 호프만계수이며 50%는 과실비율임, 중요한 것은 장해율 80%는 개호비용을 산정할 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임.

▶ 개호비용과 후유장해율

개호비용의 인정은 환자의 장해율과는 무관하다. 즉, 개호비용은 해당 환자의 장해율을 비례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개호가 인정되면 그 비용 전액이 인정됨.

▶ 개호관련판례

판결요지	사건번호
하반신완전마비, 양상지불완전마비, 감각신경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 등이 남게 되어 식사, 착탈의, 대소변, 체위변경 및 이동, 관절운동 등을 도와줄 개호인이 필요하고, 원고가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1인의 개호로서 족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95다 35517
상해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통상 입원치료의 일환으로 병원에서 제공되는 간호와 가족들의 사소한 도움 이외에는 별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각종 의료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 청구를 배척한 사례.	대법원 93다 54897
하반신 완전마비나 부전마비의 경우, 일상생활 적응기간인 3~5년간 한시적으로 개호인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92나60835, 92나64004판결
개호의 필요성에 관하여 상반된 신체감정이 있고, 농촌노동능력의 50% 상실한 피해자가 두통, 보행장애, 정신장애, 뇌기질적 변화증상, 지능저하, 성격장애등의 후유증이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개호인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워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음	서울고법 1988.4
좌측 무릎을 구부릴 수 없어 바지나 양말을 신고 벗을 때 또는 외출시 타인의 도	서울고법

움이 필요한 정도라면 개호인을 두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개호인1인이 필요하다 는 신체 감정도 불구하고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음.	1989.12.
개선이 불가능한 양측상지 불완전마비, 양측하지 완전마비의 후유증으로 음식물 섭취, 착발의, 배변, 문밖출입 등을 도와줄 개호인이 필요하고, 건강한 23세 남 자로서 여명이 16년 정도 단축된 피해자에 대하여 성인남자 1인의 개호인정	서울고법 1988.9.
19세여자로서 양하지마비, 방광, 직장마비와 늑골신경마비등의 후유증으로 100% 장해판정받고, 여명도 7년 단축되었으며, 향후 평생 동안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와 정기적인 진찰, 검사를 필요로 하고, 근 긴장이완제 및 방광 수축제요도관삽 입 등의 약대 및 처치료를 지출하여야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인여자 2인의 개 호를 인정	서울고법 1988.9
26세 남자로 실어증, 우반신 완전마비, 좌하지 불완전마비, 사고력장해, 대소변 실금의 후유증이 있어 100% 장해판정을 받고 여명도 40%단축된 피해자에 대하여 성인남자 2인의 개호 인정	서울고법 1987.4.
피해자가 사고당시 도시거주자라면 도시일용임금을 농촌거주자라면 농촌 일용임 금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고당시 도시거주자 라도 원래 농촌태생으로 그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며, 그 농가의 장남으로서 미혼으로 혼자 도시에 거주하다 영구적으로 개호를 필요로 하여 그 부모가 있는 농촌에서 개호 를 받게 된 경우 농촌일용임금 기준으로 개호비 인정	서울고법 1987.4
양안시력상실의 장해가 남게 된 피해자의 경우 신체감정일로부터 3년까지는 하루 종일, 그 이후부터 여명기간까지는 1일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 도시일용인 임 금의 50% 상당액 인정	서울고법 1988.6